

-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



연수구보

□ 구정 방향 □

함께 가꿔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120 ☎ 810-7072 / FAX 810-713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682호 2012. 3. 26.(월)

【고 시】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2-29호(인천도시관리계획(청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2-30호(도로명주소 고시) 3

【공 고】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2-249호(인천광역시연수구 구사편찬위원회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5

회							
람							

인천도시관리계획(청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청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연수구청 도시계획과(☎810-746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2년 3월 26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청학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35-22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청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변경) 조서

기 정				변 경			
가구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가구 번호	위치	면적	비고
21	12	147.7		21	12	147.7	14와공동개발 (권장)
	13	135.3			13	135.3	
	14	138.2			14	138.2	12와 공동개발 (권장)
54	6	127.4		54	6	127.4	7와 공동개발 (권장)
	7	176.7			7	176.7	6와 공동개발 (권장)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도시계획결정(변경) 조서

기 정				변 경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	21 (12,14)	지정용도	-	-	21 (12,14)	지정용도	변경없음
		권장용도	별표1의 C 권장용도			권장용도	변경없음
	54 (6,7)	불허용도	별표1의 C 불허용도		54 (6,7)	불허용도	변경없음 (단, 주택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도시형생활주택)

주) ()는 획지번호임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역명	위 치	변경사유
청학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인천 연수구 청학동 535-22, 535-23번지(공동개발) 인천 연수구 청학동 566-12, 566-13번지(공동개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변경(공동개발)을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

4. 관계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서와 같음)

5. 열람장소 : 연수구청 도시계획과(☎810-7466)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03. 26.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곡재로 59 외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810-7986~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2. 03. 2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 12. 31.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 부여고시조서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1117-1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곡재로 59	미부여	2009-12-09	사당인 동곡재를 지나는 도로여서 위치성 반영한 도로명부여	
2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산55-26, 산 55-27	인천광역시 연수구 봉재산로 68-24	미부여	2009-07-09	봉재산을 남북으로 휘감고지나는 도로여서 지형 적인 특성을 반영한 도로명	
3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산55-26	인천광역시 연수구 봉재산로 68-26	미부여	2009-07-09	봉재산을 남북으로 휘감고지나는 도로여서 지형 적인 특성을 반영한 도로명	
4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산55-26	인천광역시 연수구 봉재산로 68-36	미부여	2009-07-09	봉재산을 남북으로 휘감고지나는 도로여서 지형 적인 특성을 반영한 도로명	
5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산55-39	인천광역시 연수구 봉재산로 68-46	미부여	2009-07-09	봉재산을 남북으로 휘감고지나는 도로여서 지형 적인 특성을 반영한 도로명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2- 249호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사편찬위원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3월 23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사편찬위원회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1995년 분구 이래 2014년 3월 연수구 탄생 20주년을 맞이하여, 연수구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집대성하고 오늘날 연수구의 발전 및 변천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구민들의 정주의식을 높이고 역사적 정체성을 뚜렷이 하고자 연수구사를 편찬하고자 함.
- 연수구사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조사와 연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을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목적(제1조)

나. 위원회의 기능(제2조)

- 구사 수록 사항의 결정
- 구사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 구사편찬수행 방식 결정
- 기타 구사 편찬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제3조)

- 위원회는 12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은 연수구 소속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
- 임기는 2년, 1회 연임 가능

라. 위원의 해촉과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사항 (제4~5조)

마. 회의와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제6~7조)

바. 실비변상과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제8~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4월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032-810-7891, www.yeonsu.go.kr/ 참조: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사항

라. 제출서식

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사편찬위원회 조례」 제정(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사편찬위원회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사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사(이하 "구사" 라 한다) 편찬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구사 수록 사항의 결정
2. 구사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3. 구사편찬수행 방식 결정
4. 기타 구사 편찬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연수구 소속 공무원과 구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1명과 서기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서기는 담당업무 주사가 된다.

제4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3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임

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회의내용
4. 심의결과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실비변상) ① 위촉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 시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